제15장
경제 및 기술 협력

제15.1조
정의

이 장의 목적상, **작업 프로그램**이란 제15.5조(작업 프로그램)에 따라 당사자들이 상호 결정한 경제 및 기술 협력 활동 목록을 말한다.

제15.2조
목적

1.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간 진행 중인 경제 및 기술 협력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당사자들이 상호 이익 및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그들의 기존 경제 파트너십을 보완하는 데 합의한다.

2. 당사자들은 경제 및 기술 협력 이니셔티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, 가능한 경우 특히 아세안 회원국들과 그들의 자유 무역 파트너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진행 중인 노력과 자원 이용의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.

3. 당사자들은 경제 및 기술 협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맥락에서 당사자들 간의 개발 격차를 좁히고 이 협정의 이행 및 활용으로부터 상호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데 합의한다. 경제 및 기술 협력은 각 당사자의 상이한 수준의 개발 및 국가 역량을 고려한다.

4.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여러 장에 포함된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규정들을 인정한다.

제15.3조

적용범위

1. 이 장에 따른 경제 및 기술 협력은 작업 프로그램에 명시된 무역 또는 투자와 관련된 경제 및 기술 협력 활동을 통하여 이 협정의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이행 및 활용을 지원한다.

2. 당사자들은 다음에 중점을 둔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, 경제 및 기술 협력 활동을 탐색하고 수행한다.

가. 상품 무역

나. 서비스 무역

다. 투자

라. 지식재산

마. 전자상거래

바. 경쟁

사. 중소기업, 그리고

아. 당사자들 간 합의된 그 밖의 사안

제15.4조
자원

1. 이 장에 따른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자원은 제15.2조(목적)에 규정된 목적을 고려하여, 자발적으로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 간 합의된 방식으로 제공된다.

2. 당사자들은 상호 혜택을 기초로 작업 프로그램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,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및 파트너십 개발에 관심이 있는 다음과의 협력 및 그로부터의 기여를 고려할 수 있다.

가. 비당사자들 또는

나. 소지역, 지역 또는 국제 기구나 기관

제15.5조
작업 프로그램

1. 제15.2조(목적)제4항에 따라,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경제 및 기술 협력 규정과 제18장(제도 규정)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 의하여 확인된 필요를 고려하여 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.

2.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 및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, 당사자들은 작업 프로그램에서 다음의 활동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다.

가. 개발도상국 당사자들 및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에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 제공

나. 대중 인식 제고

다. 기업을 위한 정보 접근 개선, 그리고

라. 당사자들 간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활동

3. 당사자들은 필요한 경우 그리고 합의할 수 있는 대로, 작업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다.

제15.6조
아세안 회원국인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

당사자들은 아세안 회원국인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에게 당면한 특정 제약을 고려한다. 적절한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은, 그러한 지원에 기여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과 그러한 지원을 구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의하여 합의된 대로, 이들 당사자들이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 협정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.

제15.7조
분쟁해결의 비적용

이 협정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.